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창원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태호
전화 055-239-4365

보 도 자 료
2023. 1. 20.(금)

제목 지적능력 미약 고교 동창생 학대·착취 사범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(제11조 제1항)

-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(부장검사 정현승)는,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특수상해 등으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사안에 대해 '22. 12. 2.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후 추가로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능력 미약상태를 이용, 피해자를 지배·조종하며 장기간 착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업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 '23. 1. 17. 추가 기소하였음
- 검찰은 폭력범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년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·거래내역 분석, 관계자 조사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전 형사 사건 기록 검토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지적능력이 미약한 동창생 대상 착취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음
-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본건 범행으로 인해 거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,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지적장애가 심해진 피해자를 위하여 심리치료와 경제적 도움 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음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

- A○○[남, 29세, 자영업(피자가게 운영),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]

※ 피해자 : B○○[남, 29세, 자영업(피고인과 동업), 지적능력 미약]

● 공소사실 요지

- (경찰 송치 범죄사실) '22. 6. 14.경부터 10. 6.경까지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, 알루미늄 밀대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때려 [특수상해] 등

- (검찰 추가입건 범죄사실) ①'20. 12. 23.경부터 '21. 12. 15.경까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35,588,502원을 송금받고, ②'21. 11. 1.경부터 '22. 9. 4.경까지 가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46,732,860원을 송금받아 [사기]

2

수사 경과

● '22. 11. 15. 경찰, 특수상해 등으로 피고인 구속 송치

※ 통상의 폭력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방어흔이 확인되지 않고,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인데다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수상해 사건이 있었으며, 피고인과 피해자간 금전거래 내역 다수 확인되는 점 등 수상한 정황 확인

● '22. 12. 2. 피고인 구속기소

● '22. 11.~12. 창원지검, 보완수사 진행

※ 피고인·피해자 조사, 5년 기간('17.~'22.) 카카오톡 대화내역, 피고인과 피해자 8개 계좌의 2년 동안의 거래내역 분석,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전 사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피해사실 특정

-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전거래내역에 대해 명목 뿐만 아니라 송금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여 피해사실 특징이 어려운 상황이었음
- 다량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린 정황 확인
 - ▲ 피해자로 하여금 편도 30k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학교로 데리러 오게 함
 - ▲ 이전 사건의 합의서에 ‘피해자가 먼저 프라이팬으로 위협하였다’라는 허위사실 기재
 - ▲ 음식·콘돔 등 배달(이른바 ‘빵셔틀’) 및 피해자에게 존댓말 사용 지시
 - ▲ 피해자가 배달음식 주문, 휴대전화 요금 납부 시 피고인의 허락 요구
- 다수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착취해온 정황 확인
 - ▲ 동업을 빙자하여 1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월급 또는 수익 정산 등 일체 이행 없음
 - ▲ 가상화폐 투자 등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3,500만 원 상당, 가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4,700만 원 상당 합계 8,200만 원 편취
 - ※ 피해 금원은 피해자가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빌린 돈이었음
 - ▲ 피고인은 가게 수익금과 가상화폐 등 계좌에서 수시로 유희비, 생활비를 인출하여 사용

● '23. 1. 17. 검찰이 확인한 사기범죄(8,200만원) 추가 기소

3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경찰 송치사건 수사 과정에서 친구들 간의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종한 정황을 확인한 후, 범행 피해로 지적장애가 심해진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다량의 카카오톡 대화·계좌 분석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음
- 검찰 직접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예처럼 조종하여 동업을 빌미로 사실상 피해자의 노동을 착취하고,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혀 내어 추가 기소하였고,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도움과 심리치료 등 지원하였음
- 향후에도 검찰은 범죄자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엄벌하고,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호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음 ☑